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의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또는 정관 변경허가 등의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삭제하고, 설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법인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적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타 :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생년월일”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의2서식·별지 제1호의3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법 인 | 명칭 |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귀하

|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정관 또는 조합계약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 또는 조합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 부서)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재지:

3.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직인

준수사항

1. 「민법」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인가·등록·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내에 다음의 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 나.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경우
 - 나.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 다. 그 밖에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한 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

|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20일 |
|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 법 인 | 명칭 | 전화번호 | | |
| | 소재지 | | | |
| | 설립허가 연월일 | 설립허가번호 | | |
|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
| | 주소 | 전화번호 | | |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 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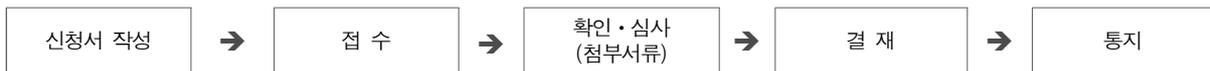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귀하

| | | |
|------|---|-----------|
| 첨부서류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합니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인 경우에는 처분 목적,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 부서)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

| | | |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신청법인 | 명칭 | 전화번호 | |
| | 소재지 | | |
| 대표자 (이사·청산인) | 성명 | 생년월일 | |
| | 주소 | 전화번호 | |
| 처분재산 | 종류 및 수량 | | |
| | 금액 | | |
| | 처분방법 | | |

처분사유

「민법」 제80조제2항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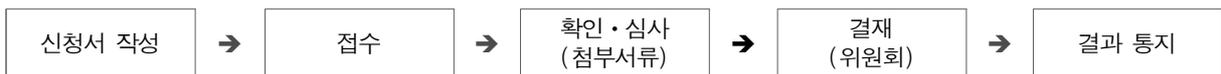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귀하

| | |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해산 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사단법인의 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만으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음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청산종결 신고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청 산 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주소 | | | 전화번호 |
| 청산법인 | 명칭 | |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

청산 연월일

청산 취지

「민법」 제94조 및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 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금융위원회

귀 하

| | |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수수료 |
| | | 없음 |

처 리 절 차



신고인

처리기관: 금융위원회(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 부서)

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에 관한 사무
2.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의 허가에 관한 사무
3. 제9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4. 제10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사무
5. 제1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6. 제12조에 따른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7. 제13조에 따른 청산 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